

#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 [ I ]
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(보건복지부, 2022.4.15.)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속 생활 방역 기준 마련

##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주요 내용

- 운영시간, 사적모임, 행사·집회 인원제한 등 모든 조치 해제
  - (시행기간) 22. 4. 18(월)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
  -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.26(월)부터 해제
  -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

### ○ 참고 : 기존 거리두기 조치 (4.4.~4.17.)

- (영업시간) **24시** (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)
- (사적모임) **10인**
- (행사·집회) 대규모 행사·집회 최대 **299인**까지 허용
- (기타) **종교 활동**은 수용인원의 **70%**, **실내 취식금지** 등

- (마스크착용) 실내·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기준 유지
  -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, 집회 · 공연 ·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
- (고위험군보호) 감염취약계층 집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유지
  - 요양병원·시설의 입·종사자 선제 검사,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 조치 유지

## 2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리 지침

□ 거리두기해제에 따른 일상 속 감염 차단 중요성 강화로  
자원봉사활동 중 생활방역수칙 마련을 통한 안전 보장

### ○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

**【 자원봉사자 방역 6대 수칙 (권고) 】** \*現 생활방역 세부수칙(질병청, 4.25.(월) 개정 예정)

- ① 코로나19 **예방접종** 완료하기
- ② 올바른 **마스크 착용**으로 입과 코 가리기(특히,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)
- ③ 30초 비누로 **손 씻기**(기침은 옷 소매에)
-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**환기**, 1일 1회 이상 **소독**
- ⑤ **사적 모임** 규모와 시간은 **최소화** 하기
- ⑥ **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,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**

### ○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

- 실내 프로그램 운영 시, 환기 기준 마련
  - . (예) 50분 활동 후, 10분 간 휴식 및 환기
- 활동 전·후 자원봉사자 열체크와 손소독
  - . 활동 전, 정상 체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 활동 참여 제외
- 활동 중 취식 시, 방역 수칙 준수
  - . 2m 거리 두기 유지와 대화 자제
  - . 취식 전후 실내 환기(10분 이상)와 소독 필수
  - .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
- 자원봉사자 코로나19 예방 접종(3차 이상) 권고
  - \* 특히, 60세 이상 자원봉사자의 경우 4차 접종 권고
- (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활동 시)
  - . 3차 접종자만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이용.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
  - .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식사 허용
- 요양병원·시설의 방역 조치 유지에 따라 해당 시설 자원봉사활동 제한

### □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

- 실내외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